

의안번호	2216009
의 퇴 인	박정 의원
회 답 일	2026. 3. 4.
추계번호	26A01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의 경감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면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상한은 50%임
 - 한편,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개정안의 임대료 경감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는 임대료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이 의결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경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비용(임대료 수입 감소)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향후 국유재산 임대 규모와 임대료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시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체 수는 159,956개 수준임

[표 1]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2024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억원)	투자액 (억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합계	159,956	204,378	429,210	35,027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545	11,213	122,875	7,536
신재생에너지 건설업	2,174	17,518	97,859	1,225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열 공급업	156,100	169,408	194,095	25,510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	1,137	6,239	14,381	756

자료: 국가데이터처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